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에스피자산운용(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 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 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 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②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 ①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회사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
- ②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1.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 등 자산에 관한 정보 (단, 국공채, 금융기관 예금, CD, MMF, RP, CMA 등 단기금융상품과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관한 정보는 예외)
 2.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집합투자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투자일임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③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상기 정보교류차단 부문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및 선행매매 금지 의무 준수를 전제로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정보교류를 상시 허용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목록으로 지정
 1. 상장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2.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한 경우
 3. 법률, 계약, 내부규정 상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을 지정하고 거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이해상충 대응방안을 마련

1. 업무상 취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도주문 체결 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선행매매 하는 행위
3. 회사가 보유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증권을 회사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4.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수익 확대를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주식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하는 행위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정보를 회사 또는 임직원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6. 집합투자재산으로 펀드 판매, 조사보고서 대가,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② 이해상충 거래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1.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통제 임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함
2.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거래유형 별로 거래중지,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중요내용

회사는 정보교류통제를 총괄하는 담당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달리 정하기 전까지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으로 정하고 준법감시조직을 정보교류 통제 담당조직으로 정함